

선	기 관 의 장
람	

시 G 보

제39호 2023. 9. 27.(수)

고 시

광양시 고시 제2023-297호	계간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	1
광양시 고시 제2023-298호	도로명주소(건물번호) 개별 고시	2
광양시 고시 제2023-299호	계간사업 시행계획(변경) 승인 고시	4
광양시 고시 제2023-300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5

공 고

광양시 공고 제2023-2027호	광양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6
광양시 공고 제2023-2054호	광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11

규 칙

광양시 규칙 제919호	광양시 이·동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18
광양시 규칙 제920호	광양시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30

규 정

광양시 규정 제443호	광양시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	36
--------------	-------------------------	----

회 람										
--------	--	--	--	--	--	--	--	--	--	--

▶ 발행 : 광양시 ▶ 편집 : 홍보소통실 (☎ 797-2323, 행정 2713)

개간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

개간사업 시행계획 승인 신청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9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9월 27일

광 양 시 장

1. 사업의 목적 : 개간사업
2. 사업의 내용 : 토공사 등
3. 사업의 효과 : 농가소득 증대
4. 사업의 구역 및 시행자

구분	토 지 소 재 지					면적(㎡)		사업비 (천원)	사업 기간 (일)	사 업 시 행 자	
	시군	읍면	리	지번	지목	개간 부지	도로 부지			주 소	성 명
계											
신규	광양	옥곡	장동	622-22 622-27 622-28	임야	619 13 920	-	2,100	2023. 9. 27. ~ 2024. 9. 20.	광양시 옥곡면 장 동 1 길 *	류*열 유*열

도로명주소(건물번호) 개별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 9. 27.

광 양 시 장

○ 도로명주소

구 분	고 시 대 상	고시조서	비 고
도로명주소 (건물번호) 부여	전라남도 광양시 진상면 웅동길 73 외 2건	별지참조	
	아 래 빈 칸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 민원지적과(☎797-3388)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3. 9. 27.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에 의거 공법 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앞으로 공공기관에 민원신청 및 서류제출 시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 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2항에 의거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로명주소(건물번호) 고시 대상

연번	업무구분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 사유
계	건 물 번 호 부 여 3 건					
1	건물번호부여	전라남도 광양시 진상면 황죽리 1537	전라남도 광양시 진상면 웅동길 73	20230927	20081001	행정리명에서 인용
2	건물번호부여	전라남도 광양시 진상면 황죽리 1537-2	전라남도 광양시 진상면 웅동길 75	20230927	20081001	행정리명에서 인용
3	건물번호부여	전라남도 광양시 옥룡면 추산리 1225-5, 1187-7, 1225-8, 1225-9, 1388, 1389-2, 1534-2	전라남도 광양시 옥룡면 도솔로 373	20230927	20090623	도솔봉이라는 지형지물에서 인용

개간사업 시행계획(변경) 승인 고시

개간사업 시행계획(변경) 승인 신청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9조제9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9월 27일

광 양 시 장

1. 사업의 목적 : 개간사업
2. 사업의 내용 : 밭작물 재배지 조성
3. 사업의 효과 : 농가소득 증대
4. 사업의 구역 및 시행자

구분	토 지 소 재 지					인가 면적 (㎡)	사업비 (천원)	사업 기간 (일)	사 업 시 행 자	
	시군	읍면	리	지번	지목				주 소	성 명
당초	광양	진상	비평	산135-17	임	491	2,140	2023. 2. 13. ~ 2023. 2. 12.	전라남도 광양시 진상면 비촌길 18-**	서*식
				산135-24	임	34				
변경	광양	진상	비평	산135-17 (667-4)	임	525	2,140	2023. 2. 13. ~ 2023. 2. 12.	전라남도 광양시 진상면 비촌길 18-**	서*식
				산135-24 (667-5)	임	23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9월 27일

광 양 시 장

가. 허가내용

하천의 명칭		광양서천(지방하천)
점용자	주소	전남 광양시 광양읍 남등길 6
	성명	광양읍사무소(광양읍장)
점용지역	위치	광양시 광양읍 칠성리 881-2번지 외 2필지
	면적	8,312㎡
점용목적		토지의 점용
점용내용		제19회 광양전통숯불구이축제
점용기간		2023. 9. 27. ~ 2023. 10. 11.

나. 관계도서는 광양시청(건설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건설과(☎061-797-273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양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광양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20일

광 양 시 장

1. 조례명 : 광양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2. 제정이유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을 통해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장애인의 배상 부담을 완화하고 이동권을 증진하여 사회활동을 참여 촉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1조 ~ 제2조)

나. 보험 가입 및 보험회사 선정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3조 ~ 제4조)

다. 보험료 납부 및 보장기준 등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5조 ~ 제6조)

라. 보험금 청구 및 지급 기준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조)

마. 보험금 지원 제외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8조)

4. 입법예고

○ 예고기간: 2023. 9. 20. ~ 10. 10.(20일간)

5. 조례 제정안: 별첨

6. 의견 제출

○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양시장(참조: 노인장애인과장, 전화: 061-797-2343, FAX: 061-797-2582, E-mail: skandkal@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광양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제정안 1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광양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 성명(단체명):

○ 주소:

○ 연락처: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광양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광양시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전동보조기기”란 장애인의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3. “전동보조기기 보험”(이하“보험”이라 한다)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동보조기기 사용에 관하여 광양시와 보험기관이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제3조(보험 가입)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전한 전동보조기기 이용을 위해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중 전동보조기기를 운행하는 모든 사람을 피보험자로 전동보조기기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4조(보험회사 선정)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을 위한 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 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5조(보험료 납부) 시장은 보험 가입을 위한 보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에 따라 선정된 보험회사에 납부한다.

제6조(보장기준 등) 보험의 보장기간, 보험료, 보장금액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과 보험회사 간 계약 체결 시 따로 정한다.

제7조(청구 등) ① 장애인이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보험자인 장애인이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보험회사는 피해 내용을 확인 후 광양시와 체결한 계약 및 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인 장애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원에서 제외한다.

1. 피보험자가 사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제한하는 경우

제9조(보험증권 보관) 시장은 보험증권 및 관계 서류를 5년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광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26일

광 양 시 장

1. 조례명 : 광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2. 개정이유

- 상위법인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광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를 현행화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운행 지역 확대에 관한 사항
 - (현행) 전라남도 관할 지역, 광주광역시
 - (개정) 전라남도 관할 지역, 광주광역시, 경상남도 하동군

- 광양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특별교통수단의 차량의 종류를 규정하는 상위법 관련 조항 변경에 관한 사항

4. 입법예고

- 예고기간: 2023. 9. 26. ~ 10. 17.(21일간)
- 예고방법: 게시판, 홈페이지 게재

5. 조례 개정안: 별첨

6. 의견 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양시장(참조: 교통과장, 전화: 061-797-3368, FAX: 061-797-2591, E-mail: mdw0548@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광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개정안 1부.

3.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광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 성명(단체명):

○ 주소:

○ 연락처: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광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시행규칙 제6조제2항” 을 “시행규칙 제6조제3항” 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전라남도 관할 지역과 광주광역시로 한다.” 를 “전라남도 관할 지역과 광주광역시 및 경상남도 하동군으로 한다.” 로 한다.

제26조(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시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동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광역이동지원센터에서 수행하고 있는 기능은 제외할 수 있다.

1.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대상자 선정신청 접수와 이용대상자 여부 확인
2.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신청 접수와 배정 관리
3. 특별교통수단등의 운행 및 안전 관리
4. 특별교통수단등을 운행하는 운전자에 대한 안내·상담 및 교육
5. 특별교통수단등의 운영에 필요한 통신수단의 구축·운영 및 관리
6. 특별교통수단등의 환승·연계 지원
7. 출발지·도착지·이용목적 등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 정보에 관한 통계 관리
8. 특별교통수단등에 관한 간행물 발간 및 보급 등 특별교통수단의 홍보
9.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6조(특별교통수단등의 운행 차량) ①법 제2조제8호 및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차량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2. (생략) ② (생략)	제16조(특별교통수단등의 운행 차량) ① -----<u>시행규칙 제6조 제3항</u>----- ----- 1·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25조(특별교통수단등의 운행 지역) ①특별교통수단의 운행 지역은 <u>전라남도 관할 지역과 광주광역시로 한다.</u> 다만, 시장은 특별교통수단 운행 현황 등을 조사하여 운행 지역을 변경·조정할 수 있다. ②·③ (생략)	제25조(특별교통수단등의 운행 지역) ① -----<u>전라남도 관할 지역과 광주광역시 및 경상남도 하동군으로 한다.</u>----- ----- ②·③ (현행과 같음)
제26조(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u>시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동지원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u> 1.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의 등록 신청 접수 2.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에 대한 자격 심사 및 확인 3. 특별교통수단등의 운행 및 운영 관리 4.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 신청 및 교	제26조(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u>시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동지원 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광역이동지원센터에서 수행하고 있는 기능은 제외할 수 있다.</u> 1.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대상자 선정신청 접수와 이용대상자 여부 확인 2.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신청 접수와 배정 관리 3.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및 안전 관리 4.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

현 행	개 정 안
<u>통 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u> <u>5.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u> <u>6.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u>	<u>에 대한 안내·상담 및 교육</u> <u>5.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에 필요한 통신 수단의 구축·운영 및 관리</u> <u>6. 특별교통수단의 환승·연계 지원</u> <u>7. 출발지·도착지·이용목적 등 특별 교통수단등의 이용 정보에 관한 통계 관리</u> <u>8. 특별교통수단등에 관한 간행물 발간 및 보급 등 특별교통수단의 홍보</u> <u>9.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u>

**광양시 이·통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9월 27일

광 양 시 장 정 인 화

광양시 규칙 제919호

붙 임 : 광양시 이·통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광양시 이·통·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광양시 이·통·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본문 중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상시 거주하는 만 19세”를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세”로 하고, 같은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7조에 따라 읍면동장이 직권으로 이·통장을 임명하는 경우 같은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 학교의 기숙사 등 주거시설의 경우 제4조제2항에 따른 재모집 공고에도 이·통장 후보자가 없거나, 후보자 중에서 적임자가 없는 때에는 해당 리·통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관리자를 이·통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같은조 제3항(중전의 제2항) 중 “만 19세”를 “19세”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해임된”을 “해임 또는 면직된”으로 하고, 같은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이·통장이 되려는 자는 해당 리·통 주민 10명 이상의 연서(세대당 1명만 서명 가능)를 받아 별지 제3호서식 신청서를 읍면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본문과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조 제3항 후단 중 “후보자”를 “적임자”로 한다.

② 주민총회는 제4조에 따라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중에서 적임자라고 판단되는 사람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면동장에게 추천해야 한다. 이 경우 주민총회는 모집공고(재모집 공고 포함) 마감 다음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개최해야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4조제4항에 따라 이통장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후보자 중 주민총회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읍면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같은조 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1호와 및 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이·통장 지원신청서 등을”을 “관련서류를”로 한다.

제7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5조제2항에 따라 2개월 이내에 주민총회에서 적임자를 추천하지 않는 경우

제8조제1항제2호 중 “경우”를 “경우(다만, 약식명령 청구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이·통장”을 “이·통·반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제5조제2항”을 “제4조제4항”으로 한다.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읍면동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그 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면동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같은 조 제4항 중 “위원회는”을 “주민총회 등에서 복수추천한 후보자 중 적임자를 선정하는 경우 위원회는”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해임되어 이·통장을 새로”를 “해임되어 새로”로 한다.

제1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이·통장”을 “이·통·반장”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읍면동장은 제1항에 따른 사임 신청서를 제출 받은 경우 신청서에 기재된 사임희망일까지 철회의사가 없으면 당해 일자에 면직처리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월정수당 지급) 이·통장이 해임 또는 면직된 경우 당해 월에 대한 월정수당 지급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할계산 방식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통·반장 임명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이·통·반장은 이 규칙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자격) ① 이·통장은 책임감과 봉사정신이 투철하여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으로서 이·통장 모집공고일 현재 2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리·통에 <u>주민등록이 되어 상시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주민</u> 이어야 한다. 다만,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리·통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2조(자격) ① ----- ----- ----- ----- ---- <u>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세</u> -----.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3. 제4조제2항에 따른 재모집 공고에도 후보자 또는 책임자가 없는 경우	3. 제7조에 따라 읍면동장이 직권으로 이·통장을 임명하는 경우
<신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 학교의 기숙사 등 주거시설의 경우 제4조제2항에 따른 재모집 공고에도 이·통장 후보자가 없거나, 후보자 중에서 책임자가 없는 때에는 해당 리·통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관리자를 이·통장으로 임명할

② 반장은 책임감과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으로서 해당 리·통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주민이어야 한다.

제4조(모집공고) ① 읍면동장은 이·통장의 임기만료 30일 전까지, 이·통장이 해임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게시판, 홈페이지 등에 14일 이상 이·통장 모집공고를 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읍면동장은 제2항에 따른 재모집 공고에도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이 없거나 후보자 중에서 적임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에 따라 직권으로 이·통장을 임명할 수 있다.

제5조(주민총회) ① (생략)

1. ~ 4. (생략)

② 주민총회는 제4조에 따른 (재)모집공고 기간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중에서 적임자라고 판단되는 사람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면동장에게

수 있다.

③ -----

----- 19세 -----
-----.

제4조(모집공고) ① -----

-----, ----- 해임 또는 면직된 -----

-----.

② (현행과 같음)

③ 이·통장이 되려는 자는 해당 리·통 주민 10명 이상의 연서 (세대당 1명만 서명 가능)를 받아 별지 제3호서식 신청서를 읍면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조(주민총회) ① (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② ----- 제4조에 따라 -----

② 읍면동장은 제1항에 따른

② _____

<u>이·통장 지원신청서 등을 제출</u> 받으면 자격요건 및 결격사유를 심사하여 적임자라고 판단되는 경우 이·통장으로 임명해야 한 다. 다만, 주민총회 등에서 추천 한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이·통장 심사 기준표에 따라 적임자를 선정하 여 임명할 수 있다. ③·④ (생략) 제7조(직권임명) ① (생략) 1. 2. (생략) <u><신설></u> ②·③ (생략) 제8조(해임사유) ① (생략) 1. (생략) 2. 형사사건 또는 「공직선거 법」 위반으로 기소(起訴)된 <u>경 우</u> 3. ~ 10. (생략) ② (생략) ③ 읍면동장이 제1항에 따라 이·통·반장을 해임할 경우에는	<u>관련서류를</u> ----- ----- ----- ----- ---. ----- ----- ----- ----- -----. ③·④ (현행과 같음) 제7조(직권임명) ① (현행과 같음) 1. 2. (현행과 같음) 3. <u>제5조제2항에 따라 2개월 이 내에 주민총회에서 적임자를 추 천하지 않는 경우</u> ②·③ (현행과 같음) 제8조(해임사유)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 ----- <u>경 우(다만, 약식명령 청구는 제외 한다)</u> 3. ~ 10.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사전에 그 취지를 주민총회 및 당해 이·통장에게 통보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생략)

⑤ 읍면동장은 제5조제2항 및 제6조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이·통장으로 임명된 경우에는 그 임명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라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제9조(읍면동 이·통·반장임명위원회) ①·② (생략)

③ 위원장은 읍면동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면동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 4. (생략)

④ 위원회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심사기준표에 따라 책임자 1명을 선정하여 읍면동장에게 추천

 --- 이·통·반장-----
 -----.

 --.

④ (현행과 같음)

⑤ ----- 제4조제4항 -----

 -----.
 -----.

제9조(읍면동 이·통·반장임명위원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읍면동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그 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면동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1. ~ 4. (현행과 같음)

④ 주민총회 등에서 복수추천한 후보자 중 책임자를 선정하는 경우 위원회는 -----

<신 설>

② 읍면동장은 제1항에 따른 사
임 신청서를 제출 받은 경우 신
청서에 기재된 사임희망일까지

<u><신 설></u>	<u>철회의사가 없으면 당해 일자에 면직처리한다.</u> <u>제15조(월정수당 지급) 이·통장이 해임 또는 면직된 경우 당해 월에 대한 월정수당 지급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할계산 방식으로 한다.</u>
---------------------------	--

**광양시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9월 27일

광 양 시 장 정 인 화

광양시 규칙 제920호

붙임 : 광양시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광양시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광양시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중 “처리제한”을 “처리 제한”으로 한다.

제1조 중 “재직중”을 “재직 중”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 인 때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 의결 요구 중 인 때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 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 중 인 때

제3조 제목 중 “제한사유”를 “제한 사유”로 하고, 제목 외 본문 중 “재직 중”과 “제한대상”을 각각 “재직 중”과 “제한 대상”으로 한다.

제4조 중 “소속공무원”을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제5조 중 “징계안건”과 “징계여부”를 각각 “징계 안건”과 “징계 여부”로 하고, “보류여부”를 “보류 여부”로 한다.

제6조 제목 “(위임규정)”을 “(위임 규정)”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광양시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u>재직중</u>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u>아니된다</u>. 다만, 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2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u>기소중인</u> 때 2. 인사위원회에 <u>중징계의결 요구중인</u> 때	----- <u>처리 제한</u>----- 제1조(목적) ----- <u>재직 중</u> ----- ----- ----- ----- ----- -----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 ----- ----- ----- ----- <u>아니 된다</u>. ----- ----- ---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 ----- ----- -----. 1.----- - <u>기소 중</u> ---- 2. ----- <u>중징계 의결 요구 중</u> ----

현행	개정안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u>수사중인</u> 때	3. ----- ----- ----- <u>수사 중</u> -----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u>내사중인</u> 때	4. ----- ----- <u>내사 중</u> ----- -----
제3조(의원면직 <u>제한사유</u> 의 확인) 시장은 <u>재직중인</u>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면직 <u>제한대상</u> 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제3조(----- <u>제한 사유</u> ----) ----- <u>재직 중인</u> ----- ----- ----- ----- <u>제한 대상</u> ----- -----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시장은 <u>소속공무원</u> 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 <u>소속 공무원</u> 이 ----- ----- -----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광양시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u>징계안건</u> 에 우선하여 <u>징계여부</u> 또는 <u>보류여부</u> 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 ----- ----- <u>징계 안건</u> ----- <u>징계 여부</u> ----- <u>보류 여부</u> ----- -----.

현행	개정안
제6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 이 정한다.	제6조(위임 규정) ----- ----- -----.

광양시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3년 9월 27일

광 양 시 장 정 인 화

광양시 규정 제443호

붙 임 : 광양시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

광양시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광양시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장의 제목 “보 칙”을 “무인비행장치 공간정보 관리”로 한다.

제26조 및 제27조를 각각 제30조 및 제31조로 하고, 제26조부터 제29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무인비행장치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인비행장치”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5호에 따른 비행장치를 말한다.
2. “무인비행장치 공간정보”란 무인비행장치를 이용하여 취득한 자료(사진, 동영상, 정사영상 등)를 말한다.
3. “정사영상”이란 항공사진에 포함된 높이차나 기울어짐 등 지형과 건물의 기록에 의한 변위를 보정하여 정사 좌표계로 변환된 영상을 말한다.

제27조(무인비행장치의 관리) ① 무인비행장치 관리담당자는 무인비행장치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무인비행장치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2. 별도 저장매체 등에 보관이 완료된 후 무인비행장치에 있는 저장매체 내 자료 및 단말기 내 캐시 데이터를 삭제하고 무인비행장치와 저장매체를 분리하여 별도 보관하여야 한다.

3. 무인비행장치는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4. 무인비행장치에 사용되는 저장매체에는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련 사항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무인비행장치 관리담당자는 정기적으로 무인비행장치를 정비해야 한다.

제28조(조종자의 역할) ① 무인비행장치를 조종하려는 자는 「항공안전법」 제125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무인비행장치 및 저장매체에 비인가자가 접근하거나 조종하지 못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무인비행장치를 조종 또는 촬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무인비행장치 운영 일지를 작성해야 한다.

제29조(무인비행장치 공간정보의 관리 및 보안) ① 무인비행장치 공간정보 관리 부서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및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 등 보안관리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② 관리부서는 공간정보가 무단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30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장 보 칙

별지 제6호서식부터 제9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장 보칙 <u><신 설></u>	제7장 무인비행장치 공간정보 관리 <u>제26조(무인비행장치의 정의) 이 규정</u> <u>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u> <u>같다.</u> 1. “무인비행장치”란 「항공안전법 <u>시행규칙」 제5조제5호에 따른 비행</u> <u>장치를 말한다.</u> 2. “무인비행장치 공간정보”란 무인 <u>비행장치를 이용하여 취득한 자료(사</u> <u>진, 동영상, 정사영상 등)를 말한다.</u> 3. “정사영상”이란 항공사진에 포함 <u>된 높이차나 기울어짐 등 지형과 건</u> <u>물의 기록에 의한 변위를 보정하여</u> <u>정사 좌표계로 변환된 영상을 말한</u> <u>다.</u> <u>제27조(무인비행장치의 관리) ① 무인</u> <u>비행장치 관리담당자는 무인비행장</u> <u>치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u> <u>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u> 1. 무인비행장치는 별지 제6호서식에 <u>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안전한</u> <u>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u> 2. 별도 저장매체 등에 보관이 완료된 <u>후 무인비행장치에 있는 저장매체 내</u> <u>자료 및 단말기 내 캐시 데이터를 삭</u> <u>제하고 무인비행장치와 저장매체를</u>
<u><신 설></u>	

<신 설>

<신 설>

분리하여 별도 보관하여야 한다.

3. 무인비행장치에는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4. 무인비행장치에 사용되는 저장매체에는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련 사항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무인비행장치 관리담당자는 정기적으로 무인비행장치를 정비해야 한다.

제28조(조종자의 역할) ① 무인비행장치를 조종하려는 자는 「항공안전법」 제125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무인비행장치 및 저장매체에 비인가자가 접근하거나 조종하지 못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무인비행장치를 조종 또는 촬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무인비행장치 운영 일지를 작성해야 한다.

제29조(무인비행장치 공간정보의 관리 및 보안) ① 무인비행장치 공간정보 관리부서는 보안관리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② 관리부서는 공간정보가 무단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마련해

<신 설>

제26조 · 제27조 (생 략)

야 한다.

제8장 보 칙

제30조 · 제31조 (현행 제26조 및 제27
조와 같음)

[별지 제6호서식]

무인비행장치 보유현황

[illegible]

[별지 제7호서식]

무인비행장치 저장매체 관리대장

연번	관리 번호	매체형태	등록일자	취급자	일련번호	불용처리 일자 및 방법	비고

[별지 제8호서식]

조종자 증명서

국 적		성 명	
자 격 명		자격번호	
구 분		생년월일(성별)	
주 소		교 부 일	
자격증 앞면			
자격증 뒷면			

위 내용이 사실임을 증명합니다.

20 년 월 일

소속 :

성명 :

(서명/인)

[별지 제9호서식]

무인비행장치 운영일지

1	일자 및 비행시간						
2	촬영대상 및 목적						
3	기종						
4	운용자	조종사	소속		부조종사	소속	
			성명 (성별)			성명 (성별)	
5	비행지역						
6	허가 및 통제사항	국방부 비행승인 허가					
7	비행 前 점검	비행체 상태	☐ 상태 양호 ☐ 점검요망				
8		촬영장비 상태	☐ 상태 양호 ☐ 점검요망				
9		안 전 조 치	☐ 완료				
10	비행 및 촬영요약						
11	비행 後 점검	촬영자료 보안조치	☐ 완료				
12	기타						